● 제303회 ● 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2021. 12. 17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김경우 의원 대표발의 】

의안번호 2872

I. 조례안 개요

1. 발의자 및 제안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경우 의원외 20명

나. 발 의 일 : 2021. 10. 15.

다. 회 부 일 : 2021. 10. 20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 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 보육의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함.
- 또한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과 관련하여「서울시 보육 조례」제21조로 간략히 명시되어 있어 보다 구체화되어 제정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, 사업추 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함.(안 제8조)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.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본 조례안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들의 권익침해
 예방 및 권익 보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제정안은 10개의 본칙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먼저,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으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함을 규정하고,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와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 및 실태조사 실시(안 제6조),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7조), 지원사업(안 제8조),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.

<조례안의 조문 배열>

제1조(목적)

제2조(정의)

제3조(시장의 책무)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

제6조(실태조사)

제7조(위원회의 설치 · 운영)

제8조(지원사업)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

제10조(운영세칙)

부 칙

2 주요사항 검토

□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의 입법화

- 「영유아보육법」제4조제4항에서는 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 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"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그러나 보육교사 권익보호 인식조사 결과(한국보육진흥원, 2020)¹) 보 육교사의 68.3%가 어린이집에서 권익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고, 이들 중 상당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참거나 아무런 조치 를 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제21조2)에서는 시장에게 보육교 직원의 노동여건 개선 노력을 규정하고 있으나, 이는 보육교직원 의 권익 보호보다는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의 제정은 그 필요 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¹⁾ 한국보육진흥원(2020), "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방안 모색" 토론회 자료 집, pp.17~38.

^{2) 「}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제21조(보육교직원 노동여건 개선) 시장은 영유 아의 심신보호와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노동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3.28> [본조신설 2015.10.8]

□ 총칙 규정(안 제1조~제3조)

- 본 조례안은 총칙규정에서 목적(안 제1조)과 용어정의(안 제2조), 시 장의 책무(안 제3조)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보육교직원 권익 보 호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적, 총괄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조례안은 정의규정을 통해 권익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인 보육교 직원을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5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의 어린 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, 이는 현행 보육교직원 권익 옹호나 지원이 대부분 원장을 제외 한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것을 보육교직원 전체 로 포괄한 것으로, 원장을 가해자로 보던 시각에서 또 다른 보호 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.

□ 기본계획 수립(안 제5조) 및 실태조사(안 제6조)

- 조례안(안 제5조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
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・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기본계획에는
 ▲기본목표 및 추진방향, ▲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▲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, ▲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, 계획 수립시, 보육교직원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하도록

노력하게 하였음.

○ 또한「영유아보육법」제11조³) 및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제2조의 2⁴)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, 종합적인 보육정책과의 통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정책효과성 및 행정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
<제4차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 중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>

3-5.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

- ○「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조례 제정」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(21년) 🕼
- 보육교직원에 대한 사회적 긍정인식 확산 ※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우의원 발의 예정
- 근로기준법 상 권리보장,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신장 지원
- ➡ 근로환경권 보장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보육의 질 제고
- 노무 및 심리상담 인력(2명) 채용(육이중합지원센터) 등 전문가 연계 지원 (III)
- 심리상담 : 보육교직원의 심리적 위축 및 스트레스 등
- 법률/노무 상담 : 학부모관계, 노사 간 갈등 문제 등 등 법적 부당한 문제 등

^{3) 「}영유아보육법」제11조(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)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,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포함되어야 한다.

^{4) 「}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제2조의2(보육계획 수립·시행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^{1.} 보육사업의 기본방향

^{2.}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

^{3.}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

^{4.}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^{5.}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
^{6.} 어린이집 차량안전관리 및 증진에 관한 사항

^{7.}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- 지난 12월 14일 서울시장이 발표한 2021~2025(제4차) 서울시 보육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 바, 향후 연도별 시행계획에도 관련 사업을 추가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.
- 한편 부칙규정으로 존속기한을 3년으로 규정하였는데, 이는「위원회조례」제11조5)에 따라 5년의 범위이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.
- 개정안(안 제6조)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, 이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□ 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7조)

- 본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갖춘 "서울별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(이하 '위원회')"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.
- 위원회는 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제3조⁶⁾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있는데, 대행체제로 갈 경우 보육

^{5) 「}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^{6) 「}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제3조(설치) 「영유아보육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서울특별시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정책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관련 사항을 심 의할 수 있도록 해당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○ 한편 부칙규정으로 존속기한을 2년으로 규정하였는데, 이는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7)에 따라 5년의 범위이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임.

□ 지원사업(안 제13조) 및 협력체계 구축(안 제14조)

- 조례안(안 제13조)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각 호로 개별 지원 사업들을 규정하고,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·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육교직원 상담 실을 운영하여 보육교직원의 심리·정서 상담 지원을 하고 있으 며,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는 '보육교사 소통방' 운영하여 보육 업무 전반 및 노무관련 on-off line 상담과 정보 제공을 지원하 고 있음

번호	사업	추진현황
제1호	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	- 보육교직원 상담실 운영(육 아종합지원센터) - '보육교사 소통방' 운영, 노 무상담 지원(여성가족재단)
제2호	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	

^{7) 「}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제11조(위원회의 존속기한)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

번호	사업	추진현황
제3호	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	
제4호	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	
제5호	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	

○ 또한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(안 제14조)하여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.

3 종합 의견

○ 지난 2020년 6월 세종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누명 보육교직원 자살사건 등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동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